

국제개혁위원회 때문에 올여름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법만 있지, 세부 지침이 없다. “사업주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문구가 전부다. 이미 폭염이 시작됐다. 작년보다 더욱 덥다는 올여름, 현장의 건설노동자가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짚으며, 건설현장에 정말 필요한 폭염 대책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허술한 지침

작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법에 들어왔다. 여태까지 고용노동부는 지침이라ப்ப시고 앵무새처럼 “물, 그늘, 휴식”만 외쳐댔다.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의된 고열작업에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은 없었다. 법에 명시된 바로는 폭염기 옥외작업은 고열작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온 가족이 골목길에 나가 돛자리 깔고 자며 더위를 이겨냈던 시절에나 할 법한 발상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한여름 벌겋게 달궈진 췌덩이를 만지며 피약별 아래서 일해야 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는 마땅히 폭염기 옥외작업이 고열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법이 개정되어 늦게나마 현장 여건에 맞는 폭염대책을 세울 수 있기에 환영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행정공백 상태다.

올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건설노동자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여럿 보였다. 먼저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하다고 한 것, 그래서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한다

는 것이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건설노조는 사업주가 하지 않는 온습도 측정을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해왔고, 그 결과 현장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2도 높음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는 지침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만, 지난해까지 몇 년 동안 이어진 노동부의 지침은 체감온도 33도, 35도, 38도에 따라 옥외작업 시간을 조정하라는 것이었다. 6.2도 차이라면 노동부의 지침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햇볕에 달궈진 건설 장비며 자재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이 노동자를 더욱 덥게 만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온습도를 측정하여 사업주가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현장 바로 앞이라 해도 백업상에서는 건설현장의 열기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굳이 옥외작업을 구분하여, 실내작업에서 강조한 “냉방이나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의무를 제외한 것이다. 한여름이면 건설현장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라도 체감온도를 낮추어 폭염과 싸우고 있는 것이 건설노동자다. 옥외작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장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점은 폭염기에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지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품질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 보냉장구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연속공정은 쉬지 말라? 건설현장은 연속공정의 연속이다. 균열이 발생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특히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한 정책이라면 휴식 부여가 곤란한 여건에서도 어떻게든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강구해야 마땅하다. 구태여 폭염 속 건설현장이 아 니더라도, 쉬는 것만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관료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거부된 폭염기 노동자 휴식권

어처구니없는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조차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 더욱 후퇴될 것임이 확인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를 권고했다. 앞서 지적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해당조항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고, 고용형태·사업형태가 다양한데도 주기적인 휴식 보장을 확립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휴식 보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규제개혁위원



▲ 2025.06.02.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박세중

회는 폭염에 노동자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 죽으라는 것인가. 더욱더 열악하여 휴게시설 비슷한 것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현장노동자의 목숨은 어떻게 돼도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의 원인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민간위원은 대개 기업 임원이나 행정학·법학 교수들이며, 정부직 공무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이다. 여기에 노동자 안전을 주무로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없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자 출신도 없다. 이러한 구성에서 노동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원칙과 의무는 사업주를 위한 ‘규제’가 되어 ‘개혁’의 대상이 되고야 한다.

건설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폭염대책은 무엇일까.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것도 방편이 되겠지만 부족하다. 노동부가 폭염기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 금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 해도, 공기 단축에 허덕이는 건설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일당쟁이’ 건설노동자는 차라리 썰 죽을지언정 굶어 죽는 걸 더 두려워한다. 실제 폭염으로 작업시간이 줄어 ‘반 대가리’만 받아서 죽겠다는 조합원 호소도 들린다. 그 명칭을 무엇이랴 하든 임금보전 없이는 어떤 건설현장 폭염대책도 실패할 것이다. 퇴직공제부금이나 실업급여, 지자체 재난수당도 활용해볼 수 있겠다.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편은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여 교대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건설노조는 폭염기만이라도 1.5에서 2배수의 노동자를 더 채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압박하는 일일 것이다. 폭염에도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것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한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장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